

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국민 제안 규정」, 「공무원 제안 규정」 및 「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」, 「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청 국민·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에 마련된 제안 창구를 통해 소방청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소방청 국민·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제안사항)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소방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·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.

제4조(제안업무의 관장) 소방청 국민·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·시행·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기획조정관이 관장한다.

제5조(제안의 접수기간)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,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모집부서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.

제6조(채택여부의 결정)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(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)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의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.

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(이하, "주관 부서"라 한다)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

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부무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.

제7조(채택제안의 실시 등) ① 채택된 제안을 추진하는 부서(둘 이상의 부서가 해당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모든 부서를 제안 추진 부서로 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실시부서"라 한다)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부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부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실시 불가 사유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부무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, 실시 불가 사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제안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혁신행정부무담당관, 채택부서의 장,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③ 민간위원은 제안이나 소방·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
2.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
3. 소방청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
4. 자체우수제안의 선정
5.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가 안전의 제안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② 안전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제10조(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)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·우수상·우량상으로 구분한다. 다만,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위원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되 제출한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.

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·결정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11조(비밀준수 의무 등) 소방청 국민·공무원 제안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2조(자체우수제안의 선정) 「국민 제안 규정」 제15조 및 「공무원 제안 규정」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한다.

제13조(시상 등)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. 다만,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.

1. 특별상 :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
2. 우수상 :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금액 또는 물품
3. 우량상 :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금액 또는 물품

② 제10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(채택제안이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)의 제안자 중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. 다만,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.

③ 소방청장은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소방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(재검토 기한) 소방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■ 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[별표 1]

국민·공무원제안 채택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 기준표

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기준				
		30	24	18	12	6
실시가능성 (30)	· 현실여건(상황)을 고려할 때, 실제 실시(적용) 가능한가?	매우 크다	다소 크다	보통	다소 있다	약간 있다
창의성 (30)	·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? ·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(또는 일부)를 모방하였는가?	20	16	12	8	4
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효율성 및 효과성 (30)	·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?	20	16	12	8	4
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적용범위 (30)	· 전(全) 행정기관(중앙·지방)에 적용할 수 있는가? · 일부 행정기관·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? ·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?	15	12	9	6	3
		전체 행정기관	다수 행정기관	일부 행정기관	일부 소속기관	일부 해당부서
계속성 (30)	·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? ·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?	15	12	9	6	3
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
채택여부 결정 기준

등급	심사위원 평균점수
채 택	60점 이상
불(不)채택	60점 미만

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기준

창안등급	심사위원 평균점수
특 별 상	90점 이상
우 수 상	80점 이상 90점 미만
우 량 상	70점 이상 80점 미만

「소방청 국민·공무원 제안 운영규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10mm×297mm (백상지 80g/m²)

「소방청 국민·공무원 제안 운영규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
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10mm×297mm (백상지 80g/m²)

제안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심사표

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기준					득점
실시가능성 (30)	· 현실여건(상황)을 고려할 때, 실제 실시(적용) 가능한가?	30	24	18	12	6	
		매우 크다	다소 크다	보통	다소 있다	약간 있다	
창의성 (30)	·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? ·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(또는 일부)를 모방하였는가?	20	16	12	8	4	
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효율성 및 효과성 (30)	·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?	20	16	12	8	4	
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적용범위 (30)	· 전 행정기관(중앙,지방)에 적용할 수 있는가? · 일부 행정기관,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? ·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 대상자가 많은가?	15	12	9	6	3	
		전체 행정 기관	다수 행정 기관	일부 행정 기관	일부 소속 기관	일부 해당 부서	
계속성 (30)	·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? ·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?	15	12	9	6	3	
	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	
합 계							

202 . 00.

심사위원(장) :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 (백상지 80g/㎡)